부양의무자 부양 거절(단절) 사유서

**수급자 성명 : 최성주 (621009, 쌍학로 47 103동 701호)**

부양의무자 성명 : (최진희, 940218)

1. 관계 개요

저는 위 부양의무자의 (부/모)로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부양의무자인 최진희 와는 실질적인 왕래가 없고, 생활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2. 부양 거절 사유

- 부양의무자인 최진희(및 배우자)는 본인 가정의 생계 유지로 인해 저를 부양할 경제적·현실적 여력이 없습니다.

- 가족 간 불화 및 단절로 인해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이거나, 정기적인 왕래·교류가 없습니다.

- 그 결과, 저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어떠한 생활비·의료비 등의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
- 과거 자녀(부양의무자)가 저와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,

 가정폭력 문제로 저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.

- 그 과정에서 제 막내딸(최영서)이 아동복지기관(보육원)에 성인에 이르기까지 보호 조치된 적이 있으며,

 이후 가족 관계는 더욱 단절되었습니다.

-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부양의무자로부터

 어떠한 경제적·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.

3. 요청 사항

상기와 같은 이유로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을 제 수급 자격에 반영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저는 실제로 자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, 국가의 생계급여 지원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
2025년 월 일

작성인 : 최 성주 (인)

연락처 : 010-5663-5729